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9.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8월 2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59회 임시회 제6차 행정위원회('98. 9.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기타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제1조)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제3조)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 기금조성(제2조) 및 기금관리(제4조)로 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기금의 용도(제5조)를 정함으로써 기금사용과 결산 및 보고(제9조)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과 관리방법 및 기금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1998. 2. 24(대통령령 제15662호) 개정되어 '98. 3. 1부터 시행되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다만, 제4조(기금의 관리) 제3항의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신청, 용자조건, 용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조례의 체계상 제5조(기금의 용도) 제3항으로 신설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제6조 ③항 및 제7조 ②항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21일 이종해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상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5875호) 제5조에 의거 명칭 변경

다. 수정 주요골자

- 동 조례 제4조 ③항을 삭제하고, 제5조 ③항에 “영 제5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용자하는 경우의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신청, 용자조건, 용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 삽입 수정
- 제6조 ③항 및 제7조 ②항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수정

라. 수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 7 호
----------	-------------

제안년월일 : 1998. 9. 21.

발의자 : 이종해위원의 1인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상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5875호) 제5조에 의거 명칭 변경

2. 수정주요골자

- 동 조례 제4조 ③항을 삭제하고, 제5조 ③항에 “영 제5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용자하는 경우의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신청, 용자조건, 용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 삽입 수정
- 제6조 ③항 및 제7조 ②항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수정
- 기타 부분은 구청 제출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③항을 삭제하고, ④항을 ③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5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용자하는 경우의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신청, 용자조건, 용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③항 및 제7조 ②항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기금의 관리)</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영 제5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용자하는 경우의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신청, 용자조건, 용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생 략</p> <p>제5조 ①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계장이 된다.</p> <p>제7조 ① 생 략</p> <p>② 총무국장, 재난관리계장이 된다.</p>	<p>제4조(기금의 관리)</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삭 제></p> <p>③ <원안과 같음></p> <p>제5조 ① 생 략</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영 제5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용자하는 경우의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신청, 용자조건, 용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6조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p> <p>제7조 ① 생 략</p> <p>② 총무국장,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년월일 : 1998. 8. 1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기타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제1조)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제3조)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 나. 기금조성(제2조) 및 기금관리(제4조)로 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다. 기금의 용도(제5조)를 정함으로써 기금사용과 결산 및 보고(제9조)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재난관리법 및 재난관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재난관리기금조성 추진계획에 의거 조치
- 다. 합 의 : 수정보완 의견 반영
- 라.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 ① 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은행)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1.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 2. 재난의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전파 및 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개발
 - 3.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 4.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의 비축 및 정비
 - 5.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 6.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등포구안전대책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
- ②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③ 영 제5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 대상자 선정,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 상환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1. 연간 기금운용계획안
 -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 ①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해서는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